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 영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0월 6일 배기한의원의 6인 발의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10월 17일 운영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 1994년 10월 17일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배기한의원)

-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23조(변안동의)와 관련 위원회 의결요건이 지방자치법 제56조(의결정족수) 규정에 위배되므로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개정(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俞載漢)

會議規則 第23條 修正案 議決된 事項을 翻覆하여 다시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發議하는 動議로서 議決要件을 強化하기 위하여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3분의 2以上の 賛成으로 議決」한 것으로 보아지나, 이는 地方自治法 第56條(議決定足數)에 違背되므로 在籍議員 3분의 2以上을 「在籍議員 過半數」로 改正함은 他當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3조 (변안) 변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23조 (변안)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안
번호 260

발의년월일 : '94. 10. 6
발 의 자 : 배기한 의원의
6인

1. 제 안 이 유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23조는 변안동의와 관련 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규정에 위배되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23조의 변안동의의 의결정족수 부분중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코자 함.

3.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23조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변안)중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의원 과반수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0. 17
운 영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0월 6일 배기환 의원의 6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1994년 10월 6일 운영위원회 회부
- 다. 상 정 일 자: 1994년 10월 17일 제28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裴基漢 議員)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 7. 6 공포(대통령령 제14317호)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개정하고,
 - 나. '91. 4. 22 영등포구 조례 제153조로 제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실제운영과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감사위원 선임방법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안 제3조)
- 나. 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 지급(안 제8조 제1항)
- 다.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일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준용(안 제8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兪載漢)

- 첫째,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46條(檢査委員의 選任) 第1項에 現行 自治區 議會의 檢査委員이 3人으로 되어 있으나, 施行令 改正에 따라 5人으로 定數가 늘어남으로 區 條例에 檢査委員의 定數의 條가 없는 것을 第2條(檢査委員의 定數)를 新設하였으며,
- 둘째, 現行 條例 第2條(資格) 第1項의 1號에 公認會計士로 限定하고 있으나, 議員이 아닌 者를 推薦하고자 할때 그 對象을 幅넓게 人 選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職에 檢査 또는

監査의 經驗이 있는 者를 推薦하는 內容으로 修正한 것은 매우 잘 되었다고 사료됨.

- 셋째, 現行條例 第3條(選任方法) 條例 第2條가 新設되므로 그에 따라 議長의 推薦에 의한 議決로써 選任하는 것을 具體化하였다고 보며
- 넷째, 現行條例 第7條(實費辨償) 第1項에 檢査委員에게 費用을 支給하는 者를 區廳長으로 指定하였으며, 支給되는 日費와 旅費의 基準을 明確히 함으로 業務에 蹉跎없도록 明示하였다고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0월 17일 이영규 의원
- 나. 수정이유
예산의 절감과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1994. 10. 17

발 의 자: 이영규 의원

1. 수정이유

예산의 절감과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수정함.

2. 수정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함(안 제2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5인”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 2 조 (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 2 조 (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
----------	-----

발의년월일: '94. 10. 6
발 의 자: 배기한 의원외
6인

1. 제 안 이 유

- 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 7. 6 공포(대통령령 제14317호)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개정하고,
나. '91. 4. 22 영등포구 조례 제153조로 제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실제운영과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로써 선임(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 지급(안 제8조 제1항)
라.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준용(안 제8조 제2항)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를 제3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중전의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임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영등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 2 조 (자격) ① (생략)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생략) 제 3 조 (선임방법) ①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영등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생략) 제 4 조 (결산검사 기간 및 감사의견서 제출) ①-② (생략) 제 5 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생략) 제 6 조 (자료제공 및 협조) (생략) 제 7 조 (실비변상) ① 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생략) 제 9 조 (감사위원의 해촉) ①-② (생략) 제 10 조 (감사위원의 제재) ①-② (생략)	제 2 조 (감사위원의 정수) 감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제 4 조 (선임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영등포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5 조 (결산검사 기간 및 감사의견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제 6 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현행과 같음) 제 7 조 (자료제공 및 협조) (현행과 같음) 제 8 조 (실비변상)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 9 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 제 10 조 (감사위원의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 제 11 조 (감사위원의 제재) ①-② (현행과 같음)